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2025. 3. 13.(목)
제 424 회 임 시 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유재목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3.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현행에 맞게 4년마다 수립하도록 개정하고,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시행계획 결과 등을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용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하는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시기를 ‘5년마다’에서 ‘4년마다’로 변경 및 시행계획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안 제4조)

○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 규정 삭제(안 제13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정의 조항에서 누락 사항 있음

○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시기가 현행 조례에는 5년, 실무에서는 4년으로 하고 조례와 실무상 불일치함

○ 이에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은 도지사의 임기인 4년에 맞추는 것이 정책 수립에 용이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조례의 근거 법령에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은 도지사의 임기 중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 등 법령과 조례의 체계정합성을 갖추고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효율적 운용 필요가 있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함

나.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일자리 창출”이외에 핵심에 해당하나 기존 조례 정의에서 규정되지 않은 “취약계층”을 근거 법령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용하고, 추가로 충청북도지사가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조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한 해당 조문의 개정은 타당함

○ **안 제4조 제1항**은 현행 조례에서 도지사가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지사의 임기는 4년으로

조례와 실제 종합계획 수립시기 불일치 흠결을 보충하여 충청북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과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일관성 연속성을 위해 도지사의 임기 4년에 맞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계획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함

○ **안 제13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도지사가 시행규칙 제정권이 있기에 기존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음

다. 상위법령 등 검토

○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에서 도지사는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 및 지역고용계획 수립시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동법 제9조의2 제1항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도지사는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조례의 근거 법령에 따라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도지사의 임기 중 추진하는 규정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의견

○ **(필요성)** 본 조례의 개정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정의 조에서 누락 된 핵심 용어를 정의하고,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시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되도록 5년에서 4년으로 정비,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당해연도 시행계획 결과를 참고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조례의 예측가능성과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당성)** 본 조례에서는 근거 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일관성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함**

다만,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참고하는 당해연도 시행계획의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